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문화체육관광부 (영상콘텐츠산업과)
연 월 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신분증의 위조·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된 영상 정보,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면제 세부 기준을 마련함(안 제26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“제26조제3항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.

1.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·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,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
2.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,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행정처분의 기준 등) ①법 제67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 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.	제26조(행정처분의 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행정처 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 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 내용 등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 다.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.</u> 1. <u>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·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</u> <u>에 촬영된 영상정보,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</u> 2. <u>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</u>

	<u>상정보,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</u> <u>으로 확인된 경우</u>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2436